

의안번호	2204550
의 퇴 인	정춘생 의원
회 답 일	2024.11.11.
추계번호	24E426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율 인상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2034년 35.3%까지 매년 1%p 인상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년 1.2조원, 2034년 17.4조원 등 2025~2034년 10년간 총 84.8조원(연평균 8.5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
- 지방세 증가액만큼 국세가 감소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재정수입의 변동이 없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지방세

(단위: 조원)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지방소비세율 인상 (안 제69조제2항)	세수효과	1.2	2.5	3.9	5.4	7.0	84.8	8.5
	연도	2030	2031	2032	2033	2034		
	세수효과	8.8	10.7	12.8	15.0	17.4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제2항 및 부칙	○ 지방소비세율을 2034년까지 매년 1%p 인상 － (현행) 25.3% － (개정안) 2025년 26.3%, 2034년 35.3% 등						－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지방소비세율 (%)	26.3	27.3	28.3	29.3	30.3	
		연도	2030	2031	2032	2033	2034	
		지방소비세율 (%)	31.3	32.3	33.3	34.3	35.3	

주: 개정안 제71조(납입)에 따른 지방소비세 배분비율 조정은 추가적인 지방세수의 변동을 야기하지 않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제2항 및 부칙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세수효과는 NABO의 2025~2033년 부가가치세수 전망액(2024.10.)¹⁾을 바탕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전·후의 차이로 계산
 - NABO의 세수 전망액은 경상GDP, 수입·수출, 설비투자 등 부가가치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시지표(NABO, 2024.10.)²⁾를 설명변수로 하여 추정
 - 개정안은 2034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는 내용이나 현시점에서는 2034년에 대한 경제전망 등 부가가치세수 전망 자료가 부재하므로, 동 추계에서는 2034년의 부가가치세수 증가율이 전년도 증가율과 동일한 것으로 전제하여 반영함
 - 지방소비세 전환금액은 전체 부가가치세수에 대한 단순비율로 추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현행 제도 하에서 전체 부가가치세수(지방소비세 포함)에 대한 NABO 전망액은 2025년 117.5조원 등으로 전망
 - 이에 따라 2025년의 국세인 부가가치세수(74.7%)는 87.8조원, 지방소비세수(25.3%)는 29.7조원으로 추정

1)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국세수입 전망: 2024~2028」, 2024.10.

2)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2024.10.

[표 2] 현행 제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수 추정액(국세 및 지방소비세 포함): 2025~2034년
(단위: 조원)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2030	2031	2032	2033	2034		
전체 부가가치세 (A)	117.5	123.6	129.2	135.0	140.9	1,448.0	144.8
	147.1	153.4	160.1	167.0	174.2		
국세인 부가가치세 (B=A×74.7%)	87.8	92.3	96.5	100.8	105.2	1,081.6	108.2
	109.9	114.6	119.6	124.8	130.2		
지방소비세 (C=A×25.3%)	29.7	31.3	32.7	34.1	35.6	366.3	36.6
	37.2	38.8	40.5	42.3	44.1		

주: 국회예산정책처(2024.10.)의 부가가치세수 전망을 바탕으로 하되, 2034년의 경우 전년도에의 세수 증가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함

- 개정안에 따라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을 매년 1%p씩 인상할 경우, 2025년의 경우 지방세수는 현행(29.7조원) 대비 1.2조원 증가한 30.9조원 수준일 것으로 추계
- 2025년의 국세인 부가가치세수는 현행(87.8조원) 대비 1.2조원 감소한 86.6조원으로 추계

[표 3] 개정안에 따른 부가가치세수 추정액(국세 및 지방소비세 포함): 2025~2034년
(단위: 조원)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2030	2031	2032	2033	2034		
전체 부가가치세 (A)	117.5	123.6	129.2	135.0	140.9	1,448.0	144.8
	147.1	153.4	160.1	167.0	174.2		
국세인 부가가치세 (D=A×(1-연도별 지방소비세율))	86.6	89.8	92.6	95.4	98.2	996.8	99.7
	101.0	103.9	106.8	109.7	112.7		
지방소비세 (E=A×연도별 지방소비세율)	30.9	33.7	36.6	39.5	42.7	451.1	45.1
	46.0	49.6	53.3	57.3	61.5		

- 동 개정안에 따라 지방세수는 2025년 1.2조원, 2034년 17.4조원 등 2025~2034년 10년간 총 84.8조원(연평균 8.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4] 개정안에 따른 세수변화 추정: 2025~2034년

(단위: 조원)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2030	2031	2032	2033	2034		
국세인 부가가치세 (F=D-B)	-1.2	-2.5	-3.9	-5.4	-7.0	-84.8	-8.5
	-8.8	-10.7	-12.8	-15.0	-17.4		
지방소비세 (G=E-C)	1.2	2.5	3.9	5.4	7.0	84.8	8.5
	8.8	10.7	12.8	15.0	17.4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소 등을 감안 시, 지방정부의 재정변화는 2025년 0.7조원 등 2025~2034년 10년간 총 50.8조원(연평균 5.1조원) 증가하는 규모일 것으로 예상

- 지방소비세를 인상 시 국세인 부가가치세수가 감소하므로,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이 감소
- 2025년의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수가 1.2조원 감소함에 따라 지출항목인 지방교부금이 0.2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0.2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반영한 순 지방정부 재정 증가 규모는 0.7조원 수준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의 변화: 지방정부 재정

(단위: 조원)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2030	2031	2032	2033	2034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변화(F)	-1.2	-2.5	-3.9	-5.4	-7.0	-84.8	-8.5
	-8.8	-10.7	-12.8	-15.0	-17.4		
지방소비세수 변화 (G)	1.2	2.5	3.9	5.4	7.0	84.8	8.5
	8.8	10.7	12.8	15.0	17.4		
지방교부금 (H=F×19.24%)	-0.2	-0.5	-0.7	-1.0	-1.4	-16.3	-1.6
	-1.7	-2.1	-2.5	-2.9	-3.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I=F×20.79%)	-0.2	-0.5	-0.8	-1.1	-1.5	-17.6	-1.8
	-1.8	-2.2	-2.7	-3.1	-3.6		
순 지방정부 재정변화 (J=G+H+I)	0.7	1.5	2.3	3.2	4.2	50.8	5.1
	5.3	6.4	7.7	9.0	10.4		

- 단, 향후 경제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부가가치세수 규모가 동 추계 상의
전망과 다를 경우 세수(재정수입) 변화 추정치도 달라질 수 있음을 감
안할 필요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김효경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경	02-6788-4647	hkkim@assembly.go.kr